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
(박준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14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7.

발 의 자 : 박준태 · 김승수 · 조지연  
최수진 · 박성민 · 박충권  
강승규 · 김소희 · 최보운  
박덕흠 · 조배숙 · 서지영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 그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).



##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1호 전단 중 “난임치료”를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”로 하고,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「한의학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(이하 “한방난임치료”라 한다) 비용의 지원
-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친생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

비 지원을 받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난임·유산·사산 극복 지원사업) ① (생 략)</p> <p>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<u>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. 이 경우 「한의약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(이하 “한방난임치료”라 한다)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2. ~ 4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1조(난임·유산·사산 극복 지원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</u>----- - <u>&lt;후단 삭제&gt;</u></p> <p>2. <u>「한의약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(이하 “한방난임치료”라 한다) 비용의 지원</u></p> <p>3. ~ 5. (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③ <u>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친생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</u></p>

③ (생략)

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